

현안보고

'18년 4분기·'19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

□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
 -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예비비 집행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집행액	집행내역	집행사유
서울지하철 9호선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청구의 소 판결금 지급	18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 출 일 : '18.12.21. ○ 지급대상 : (주)유창 ○ 지출사유 : 판결금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송 종결(원고 일부 승소)에 따른 판결금 지급 ○ 1심 판결에서 집행을 명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는 판결일로부터 연15%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므로,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
서울지하철 9호선2단계 915공구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 판결금 지급	39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 출 일 : '19. 2.13. ○ 지급대상 : 아주자산개발(주) ○ 지출사유 : 판결금 지급 	

- 붙임 1.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(원고 : (주)유창) 소송개요 1부.
 2.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(원고 : 아주자산개발(주)) 소송개요 1부. 끝.

작성 자	도시철도건축부장 : 최성태 ☎ 772-7070 건축공사과장 : 이병희 ☎ 7072 담당:김광기 ☎ 7343
	도시철도토목부장 : 정대현 ☎ 772-7040 토 목 3 과 장 : 호경수 ☎ 7043 담당:장대성 ☎ 7237

□ 사건개요

- 사건번호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 523580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
- 당사자 : 원고 (주)유창 (법무법인 정원)
피고 서울특별시 (법무법인 이림)
- 원고소가 : 186,716,313원
- 청구취지
 - 「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」와 관련하여 원고 주식회사 유창은 소외 경남기업에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 및 납품을 하는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계약을 이행하였음.
 - 원고는 '14.12.1. 부터 '15.3.7.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금 186백만원 상당 액수의 미수금을 주장하며 우리시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청구함.

〈공사개요〉

- 위 치 :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앞(언주역)~삼성동 힐스테이트APT(선정릉역)
- 사업규모 : 총연장 1,770m(정거장 2개소, 본선 1,440m)
- 사업기간 : '08. 6. 2. ~ '14.12.31.
- 사업비 : 97,973백만원
- 시공사 : 경남기업(주) 외 1개사

□ 추진경위

- '14.12. 1. ~ '15. 3. 7 : 자재납품(유창)
- '15. 3.26. : 자재대금 직불요청(유창 → 도시기반시설본부)
- '15. 3.28. : 지하철 9호선 2단계 개통
- '15. 4. 7. : 경남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(서울중앙지방법원)
- '15. 5. 1. : 915공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신청건 관련 회신(도기본 → (주) 유창)
 - 우리시와 (주) 경남기업 간에 915공구 공사와 관련된 채권 및 채무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황이라,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함.

- '15. 6.15. : 도급계약 해지(경남기업)
- '17.11.30. : 기업회생절차 종결(경남기업)
- '17.12.13. : 소장 접수(유창→도시기반시설본부)
- '18. 1.31. : 응소방침 수립(법률지원담당관) 및 소송대리인 지정
(소송대리인 : 변호사 이림 법률사무소)
- '18. 4. ~ 11. : 총 3회 변론 진행
- '18.12. 4. : 판결 선고(원고 일부승소)
- '18.12.27. : 민사소송 종결통보(원고 일부승소)

소송현황 : 소송종결

구 분	1 심	소송종결	비 고
선고결과	원고 일부승소		
선 고 일	'18. 12. 4.	'18. 12. 27(확정일)	
판결요지	원고(유창)에게 178백만원 및 이에 대한 '17.12.21.부터 '18.12. 4.까지는 연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		

판결금 지급현황

(단위 : 원)

구 분	계	원 금	이 자	비 고
판결금	188,969,535	178,716,589	10,252,946	

※ 지급사유 : 원심판결에는 연15%의 고율이자 발생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

향후계획

- (주)유창에 지급한 1심 판결금에 대해 현재 경남기업을 상대로 진행중에 있는 항소심(공사대금 지급)에서 공제 요청.

작성 자	도시철도건축부장 : 최성태 ☎ 772-7070 건축공사과장 : 이병희 ☎ 7072 담당:김광기 ☎ 7343
------	---

□ 사건개요

- 사건번호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518562(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)
- 당사자 : 원고 아주자산개발(주) (법무법인 일원송헌)
피고 서울특별시 (법무법인 로텍)
- 원고소가 : 371,827,808원
- 청구취지
 - 「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」와 관련하여 원고 아주자산개발 주식회사가 경남기업에 아스콘을 납품하였으나,
 - 경남기업이 경영악화 및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아스콘 대금을 미지급함에 따라
 - '16. 4월 경남기업이 미지급한 아스콘 대금(371백만원)에 대해 서울시 지급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함

〈공사개요〉

- 위 치 :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앞(연주역)~삼성동 힐스테이트APT(선정릉역)
- 사업규모 : 총연장 1,770m(정거장 2개소, 본선 1,440m)
- 사업기간 : '08. 6. 2. ~ '14.12.31.
- 사업비 : 97,973백만원
- 시공사 : 경남기업(주) 외 1개사

□ 추진경위

- '14. ~ '15. 3 : 자재 납품 (아주자산개발→경남기업)
- '15. 3.27 : 경남기업 기업회생절차 신청 (서울중앙지방법원)
- '15. 3.28 : 9호선 2단계 개통
- '15. 4. 7. : 경남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(서울중앙지방법원)
- '15. 6.15. : 도급계약 해지 (경남기업→도기본)
- '16. 4. 4. : 소장 접수 (아주자산개발→도기본)

- '16. 5. 9. : 응소방침 수립
- '16. 5.16. : 소송대리인 지정 (소송대리인 : 법무법인 로텍)
- '17.11.30. : 기업회생절차 종결 (경남기업)
- '16. 6. ~ '18.12. : 총 6회 변론 진행
- '19. 1.18 : 1심 판결 선고 【원고(아주자산개발) 일부승소】
- '19. 2.13 : 1심 판결금 지급 【391백만원】

소송결과

구 분	1 심 (2016가합 518562)	비 고
선고결과	원고 일부승소	
선 고 일	'19. 1.18	
판결요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시는 발주자로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인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아주자산개발에게 아스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, -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서울시는 경남기업이 미지급한 아스콘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아주자산개발에게 지급해야 하나, - 아주자산개발이 경남기업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 받은 금액이 있어 이를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아주자산개발에 지급해야 함. 	
판 결 금	391백만원 ('19. 2.13 지급)	

판결금 지급 현황

-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급
 - 지급일시 : '19. 2. 13.(수)
 - 지급금액 : 390,562,716원
 - 재원부담 : 예 비 비 (※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예산에서 지급)
 - 원금 339,660,213원 + 이자 50,902,503원

(단위 : 원)

구분	원금	이자			지급금액
		'16. 4. 8~'19. 1.18 (연 5%)	'19. 1.19~'19. 2.13 (연 15%)	소계	
판결금	339,660,213	47,273,257	3,629,246	50,902,503	390,562,716
계	339,660,213			50,902,503	390,562,716

※ 지급사유 : 원심판결에는 연15%의 고율이자 발생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

□ 향후계획

- 1심 판결에 따른 항소여부 검토결과 항소 포기
 - 1심 판결에 따른 항소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항소에 실익이 없어 항소 포기
- 아주자산개발에 지급한 1심 판결금에 대해 현재 경남기업을 상대로 진행중에 있는 항소심(공사대금 지급)에서 공제 요청

작성 자

도시철도토목부장 : 정대현 ☎ 772-7040 토목3과장 : 호경수 ☎ 7043 담당:장대성 ☎ 7237